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31 | 2024.04.15 (2024.04.08~04.14)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3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4.08~04.14)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 및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에 대해 논의한바, 「**AI-반도체 이니셔티브**」 9대 기술혁신 집중 투자로 ‘**인공지능 G3**’ 도약,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등 활용, 용인 국가산단 조성기간 대폭 단축**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스포츠산업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인 ‘제4차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2024~2028)’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계획은 ‘함께 성장하는 스포츠산업, 새로운 대한민국 성장동력’이라는 비전하에 3대 추진전략과 9개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 3대 추진전략: 촘촘한 지원을 통한 스포츠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산업 융복합을 통한 신시장 개척, 지역이 주도하는 스포츠산업 균형 성장

※ 9개 세부 추진과제: ①기업단계별 성장지원 체계 고도화, ②맞춤형 산업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③전문인력 공급망 구축 및 확대, ④지속 성장 산업 기반 강화, ⑤디지털 융복합 스포츠 참여·관람 서비스 확산, ⑥ICT 혁신 기반 스포츠 인프라 첨단화·스마트화, ⑦K-컬처 연계 스포츠산업 저변 다각화, ⑧지속 가능한 지역 스포츠산업 성장 지원, ⑨지역 스포츠산업 균형발전 관리

<국토교통부>는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입법(행정)예고】

<기획재정부>는 민간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그리고 조달통계의 대상으로 계약 외에 입찰,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 추가, 혁신제품의 발굴·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과 조달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달사업과 관련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할 수 있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집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과 통합발전소사업 등 2개 유형의 전기신사업에 대해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를 사용할 시 전력시장 외 거래 허용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통합발전소사업 에너지자원의 세부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에 관한 변경인증을 받고 변경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위반행위 종류 및 배출가스의 증감정도에 따른 가중 부과계수를 정하고, 자동차 제작자가 중요사항 외의 변경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변경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보고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차부터 3차까지 각각 500만원으로 정하며, 제작 당시에 발생한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차부터 3차까지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신설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임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법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지난 4월 1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이후 현재까지 국회의사일정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만, 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 제21대국회 임기내 의사일정이 정해지면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제22대국회의 개원 이후 의사일정(안)은 이번호에 간략히 수록해 드린 내용과 지난 4월 11일 보내드린 저희 세종 입법전략자문팀의 Special Report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 제시 등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관계부처 합동) ····· 6
- 스포츠산업,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4차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2024~2028)’ 발표(문화체육관광부) ····· 7
- 뉴:빌리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재개발 재건축 등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국토교통부) ····· 10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 1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 12
- 주택도시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3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3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5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5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5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5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기획재정부) ····· 16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 17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 18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 18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 1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 20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 21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 2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 23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 23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24
-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국토교통부) ····· 25
-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국토교통부) ····· 26

3. 법률 발의(제출)안 [바로가기](#)

-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김진표의원 등 11인) 27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 예정된 회의 일정 없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3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4.08~04.14) [바로가기](#)

- [통상관세] EU의 「역외보조금 규정」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입법전략자문] Special Report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그 결과와 영향
- [금융] 코인 발행재단과 MM업체 간의 소송에서, 제1심에서 사실상 대부분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코인 발행재단 측을 대리하여 양 측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 낸 사례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 제시 등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 - 「AI-반도체 이니셔티브」 9대 기술혁신 집중 투자로 ‘인공지능 G3’ 도약 -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등 활용, 용인 국가산단 조성기간 대폭 단축	2024-04-09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 및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에 대해 논의함

대만 지진 등으로 인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를 확인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 구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산업부 · 기재부 · 과기정통부 · 국토부 ·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 네이버 · 사피온코리아 등 관련 기업이 참여함. 아울러 AI반도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AI G3로 도약하기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방향 등을 논의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 최근 대만 지진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요인에 대한 국내 반도체 수요기업 및 반도체 설계 · 장비 기업 점검 결과, 아직까지는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업계 · 협회 등과 함께 반도체 공급망과 수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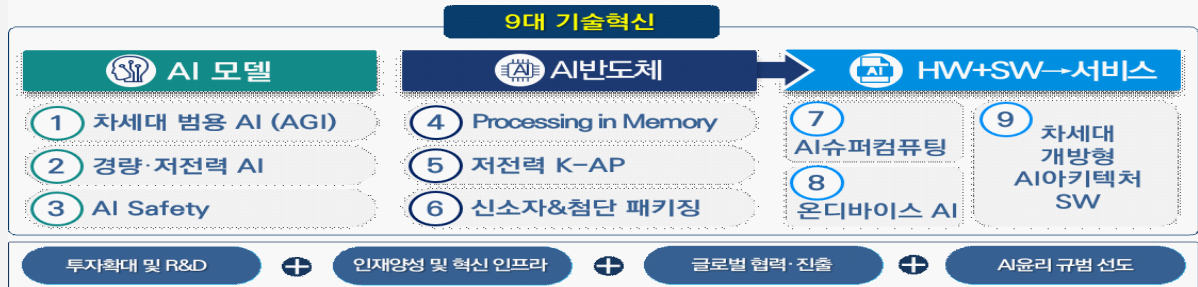
②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

- 기반시설은 확실하게 지원하면서, 기업의 속도감 있는 투자 뒷받침
- 현장형 전문인력을 충분히 양성하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튼튼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더해 첨단 초격차 기술확보

③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

- AI가 국가의 산업 경쟁력은 물론 안보와 글로벌 위상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이른바 AI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현재의 반도체로는 성능과 에너지 비용의 문제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음
- 앞으로의 AI 경쟁력은 AI반도체를 비롯한 HW 혁신과 이에 대응하는 AI모델 간의 유기적인 연계 · 협력을 통해 성장할 전망이다
- 이에,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분야에서 새로운 신화를 만들고, AI G3 도약을 위해 9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자 함

인공지능 G3 도약, K-반도체 새로운 신화 창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는

- ▶ AI-반도체 9대 기술혁신에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투자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인재양성 및 혁신 인프라, 글로벌 협력·진출, AI윤리 규범 선도 등 AI-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을 지원할 계획
- ▶ 대통령이 지난 유엔 총회 기조연설, 뉴욕대 및 소르본대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제안한 디지털 질서 정립을 지속 추진하고, 올해 5월 AI 안전·혁신·포용을 논의하는 'AI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AI 윤리 규범에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
- ▶ 아울러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민관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위해 지난 4월 4일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우리나라가 AI반도체로 K반도체의 새로운 신화 창조해 나가는 구심점으로 활용할 계획임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4차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2024~2028)' 발표**
- 세계 경쟁력 강화, 신시장 개척, 균형성장 등 3대 전략,
9개 추진과제 도출

2024-04-09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스포츠산업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2023년 기초 연구를 통해 40여 명의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제4차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2024~2028)'을 발표함

스포츠산업 시장규모는 '22년 78조 1,0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3% 성장했고, 코로나19 이전 수준('19년 80조 6,840억 원)으로 빠르게 회복됨. 스포츠산업은 시설업, 용품업,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는데, 최근 골프, 수상스포츠 관련 야외 스포츠 시설업, 낚시 캠핑 등 아웃도어 스포츠용품업, 스포츠마케팅·방송 콘텐츠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은 세계스포츠산업 시장의 흐름과 비교하면 영세성과 내수 중심의 구조로 인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산업 성장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스포츠산업의 경우 국민들의 일상적인 스포츠 참여 및 관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 기존 공급 중심의 정책 방안에서 벗어나 참여와 관람을 촉진할 수 있는 수요 중심의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10억 원 미만 매출액 사업체 비중 94.4%, 스포츠산업 매출액 중 수출 비중 2.4% <2022 스포츠산업조사>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산업 회복·성장기에 발맞춰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스포츠산업 분야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4차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함께 성장하는 스포츠 산업, 새로운 대한민국 성장동력'이라는 비전하에 3대 추진전략과 9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함

<비전과 전략>

비전	함께 성장하는 스포츠산업, 새로운 대한민국 성장동력		
핵심 가치	[글로벌화] 현장 중심 스포츠기업 육성체계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혁신 창의] 창의적인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스포츠산업 서비스 혁신 추구 [지역 균형 성장] 성장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 스포츠산업의 균형 발전 [고부가가치화] K-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연계를 통한 스포츠산업 고부가가치화		
핵심 목표	[스포츠산업 규모 100조 시대 도약] 78조 원('22년) → 105조 원('28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스포츠 혁신기업 육성] 872개('22년) → 1,000개('28년) [지역 사업체 수 증가로 지역균형발전] 50.2%('22년) → 55%('28년) [스포츠산업 종사자 수 60만 명 달성] 44만명('22년) → 60만명('28년)		
추진 전략	출중한 지원을 통한 스포츠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1-1	기업단계별 성장지원 체계 고도화
		1-2	맞춤형 산업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1-3	전문인력 공급망 구축 및 확대
		1-4	지속 성장 산업 기반 강화
	고부가가치산업 융복합을 통한 新시장 개척	2-1	디지털 융복합 스포츠 참여관람 서비스 혁신
		2-2	ICT 혁신 기반 스포츠 인프라 첨단화·스마트화
		2-3	K-컬처 연계 스포츠산업 저변 다각화
	지역이 주도하는 스포츠산업 균형 성장	3-1	지속 가능한 지역 스포츠산업 성장지원
		3-2	지역 스포츠산업 균형발전 관리

3대 추진전략의 세부내용으로는

① 해외시장에서 스포츠기업이 세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내수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해외시장에서도 스포츠기업이 세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고도화를 위해 3년 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20% 이상인 고성장 스포츠기업에 대한 종합지원(투자유치, 해외진출 등)을 강화하고,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스포츠 서비스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
- 신시장 개척, 기업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서부터 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이를 위해 해외시장 조사, 해외용 콘텐츠 개발, 현지 사업 운영 준비, 홍보 등 지원사업 신설
- 스포츠용품 중 수입대체 및 수출유망 품목을 선정해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대외 의존도를 개선
- 스포츠기업의 지속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서울, 광명)를 중장기적으로(가칭)스포츠코리아랩으로 개편하고, 신규 아이디어 발굴 및 실현, 기술교육·실험 등 산업지원 기능을 강화해 스포츠 스타트업기업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
-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법률 개정과 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

② 고부가가치산업 융·복합을 통한 신(新)시장 개척으로 산업 저변 넓힌다

- 스포츠 참여·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 분야 특화 인공지능 개발 및 개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추천, 운동량과 운동 효과성 측정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
- 더욱 생생하고 편리한 스포츠 관람을 위해 확장현실(XR) 기반의 중계 관람 서비스 기술, 스마트경기장(얼굴인식, 테러감지 등) 기술, 취약계층 접근성 확대(진동 감지 장애인 좌석, 청각장애이용 응원가사 제공 앱 등) 기술 등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할 방침
- K-스포츠 종주국 종목(태권도, 이스포츠)과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종목(자전거, 트래킹, 동계스포츠 등)을 중심으로 스포츠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스포츠와 콘텐츠(예능, 공연 등) 융·복합 기획 제작을 지원해 K-스포츠산업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

③ 지역이 주도하는 스포츠산업 생태계 조성

- 지역을 스포츠 대표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강원도 양양(서핑), 충북 단양(패러글라이딩)과 같이 이미 자생적으로 민간스포츠사업자가 밀집된 지역을 ‘스포츠단지’로 지정하고 통합홍보 지원
- 기존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보급하던 가상현실(VR) 스포츠실 보급 사업을 노인복지관, 국공립유치원 등으로 확대
- 사계절 훈련·경기가 가능한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을 확대 조성
- 지역 민간체육시설업에 대한 시설 안전·소비자 안심 시설 인증제의 실효성을 높이며, 안전관리 모범사례를 발굴해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모델을 정립·보급할 수 있는 지역 체육시설을 확대
- 프로스포츠 연고지 구단과 함께 지역민 관람 유도, 지역 상권 연계 홍보 등을 추진해 지역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기여
- 지역 스포츠산업의 균형발전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해 지역균형발전에 부합하는 스포츠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

국토교통부는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힘.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뉴:빌리지 패스트트랙

-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하여, 용적률 및 층수 완화(「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6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
-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 완화(100%→80%, 자율주택정비)와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소규모정비법」 개정 추진, 6월)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 가량 사업 기간 단축 예상
-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하여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하고, 주민수요 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지자체 설명회도 4월 내(4.17일) 개최* 계획

* 유형별 세부 추진절차, 선정기준 등에 대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도 실시 예정(6월)

② 노후계획도시 정비 패스트트랙

- 노후계획도시의 경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 절차단축 제도* 외에도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약 2년 단축)하고,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약 1년 단축)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기대됨

* 재건축 연한 미적용(4년), 안전진단 면제(1년) 등 법정제도를 통해 약 7년 기간 단축 전망(<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의 제도개선 내용도 노후계획도시에 적용 가능)

** (예시) 거버넌스를 통한 공사비 검증,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조례로 설정, 상승된 용적률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고 공공기여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주민갈등 최소화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특별법 상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이 정형화 되어있는 만큼 향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갈등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할 계획

③ 노후계획도시 정비 패스트트랙

- 노후계획도시의 경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 절차단축 제도* 외에도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약 2년 단축)하고,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약 1년 단축)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기대됨

* 재건축 연한 미적용(4년), 안전진단 면제(1년) 등 법정제도를 통해 약 7년 기간 단축 전망(<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의 제도개선 내용도 노후계획도시에 적용 가능)

** (예시) 거버넌스를 통한 공사비 검증,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조례로 설정, 상승된 용적률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고 공공기여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주민갈등 최소화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특별법 상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이 정형화 되어있는 만큼 향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갈등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할 계획

③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

- 그동안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하여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
-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하여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
- 서울시의 경우 시 자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3.27)을 발표하여 개정 법률(‘24.1 시행)에 도입된 통합심의를 적극 시행하고, 공공 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규제도 개선하여 사업속도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

* (사례)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3.27)하였고, 정부에서도 이를 즉시 수용하여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향(표준건축비→ 기본형 건축비의 일정비율)할 것을 발표(3.28, 건설경기회복 지원방안)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행정안전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4-12 시행

2층 이상 4층 이하에 위치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발코니 또는 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와 피난기구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되,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4조제2항, 별표 2 제1호다목 등)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4-11 시행
-----	---	---------------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 등이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의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중 종이컵을 제외함으로써 해당 영업자의 경비 부담을 완화하고 1회용 종이컵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재생원료의 범위 신설 (제1조의2)

- 재생원료의 범위를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이용한 원료로서 폐유리병을 가공하여 제조한 유리분말, 폐금속캔을 압축하거나 파쇄하여 제조한 금속원료 등으로 구체화

② 무인정보단말기 정의 신설 (제4조제1항)

-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음식물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로 무인정보단말기 정의 신설

③ 재생원료의 비율 표시 (제23조의3)

-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발포합성수지, 합성수지재질 제품·포장재로 제조한 재생원료를 식품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의 경우 10퍼센트 이상,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20퍼센트 이상 사용한 경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

④ 재활용제품 추가 (별표1)

-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 및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유류,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와 메탄올, 바이오디젤, BD20 및 바이오중유

⑤ 숙박업의 1회용품 사용제한 준수사항 (별표2)

-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및 치약, 1회용 샴푸 및 린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

⑥ 1회용 종이컵 사용 규제 완화 (별표2)

-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규제 대상 1회용품에서 종이컵 제외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4-17 시행 예정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인의 금융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보증법」이 개정(법률 제 20047호, 2024. 1. 16. 공포, 4. 17. 시행)됨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계약의 종료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정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정보 등을 제공받는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에서 자기자본의 90배로 상향하려는 것임 (제21조제1항제3의2호, 제23조제1항, 제25조의3, 제25조의4 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4-09 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추가하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완화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주차장에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산정할 때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 수의 3.5배수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제6조제1항제8호 신설, 제37조제4항 신설, 제37조제4항 신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4-09 시행
(다만, 일부 개정규정은
별도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이 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64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

이에 따라,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점검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법인을 정하고,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입주자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의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철거의 행위 허가·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거주기간 요건 완화 (제11조제3항)

-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함

②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 점검 수행 기관 구체화 (제23조제11항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③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 사항 마련 (제91조의2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층간소음 피해 및 분쟁조정 현황과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함

④ 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에 대한 행위 허가·신고에 관한 규제 완화 (별표 3)

- 종전에는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는 그 면적 중 '2분의 1'까지만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면적의 '4분의 3'까지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어린이집의 일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년 동안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어린이집 폐지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입주자 동의 외에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어린이집의 시설 전부를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물막이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면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4-09 시행

보상을 위한 기초 조사를 충실하게 하고, 작성이 의무화된 기본조사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재결신청서에 토지 등에 관한 공부(公簿)의 조사 결과 및 현장조사 결과를 적은 기본조사서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12조제2항제1호)

국토교통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4-09 시행

법문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영업의 ‘폐지’를 ‘폐업’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용어를 바꾸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법 문장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16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6조 등)

국토교통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4-09 시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의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으로서 적재물을 포함한 실외이동로봇의 질량이 100킬로그램 이하이고 시속 5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도시공원의 차도 외 장소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효용을 증진하고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22조제1호, 제50조제5호의2 신설, 별표 1 제1호 등)

국토교통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4-09 시행

국내 수소산업 관련 기업의 낮은 집적 수준을 고려하여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으로 수소산업 관련 사업자 간에 상호연계하여 산업 발전을 향상시키는 집적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 외에 그 집적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수소산업의 육성과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제28조 각 호)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2024.04.12. ~05.22.

민간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제정(2023. 12. 26, 법률 제19828호)됨

wjsd

이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2조)

- 공급망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경제안보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공급망 위기에 관한 주요 시책’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급망안정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②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3조)

-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제출한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③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구성 (안 제4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25명의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16명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정함
- 그 밖에 경제안보 및 공급망 관련하여 단체·기관·협회의 장,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7명을 위원으로 하고, 단체·기관·협회의 장을 제외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으로 함

④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7조)

-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10명 이내(위원장 1명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1회 연임가능)으로 함

⑤ 조기경보시스템 운영방법 및 절차 (안 제12조)

-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조기경보 대상물품, 자료제출 대상·방법 등을 정하고, 시스템 운영·관리기관이 운영 결과를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종합 분석·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급망 위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현황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 조기경보 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⑥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및 사후관리 (안 제16조)

- 법 제19조에 따른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급망 안정화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선도사업자 선정 기준·절차, 사후관리 사항 등을 정함

⑦ 위기대책본부 (안 제22조)

-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하는 위기대책본부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기대책본부의 장이 별도의 실무반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

⑧ 긴급조달 (안 제23조)

-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긴급조달물자 조달계약 체결 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효과적 조달이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

⑨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안 제30조)

-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를 7명(위원장 1명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추천 2명,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동 기관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을 위촉하도록 하되,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으로 함

※ 문의처 :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공급망관리제도화팀\)\)](mailto: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공급망관리제도화팀)) (전화: 044-215-7881, 팩스: 044-215-8166)

기획재정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11.
~05.21.

조달통계의 대상으로 계약 외에 입찰,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 추가, 혁신제품의 발굴·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과 조달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달사업과 관련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할 수 있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집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조달통계의 정책 활용을 높이기 위해 작성 대상에 추가된 입찰,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통계 작성 및 자료요구 대상에 구체적으로 반영 (안 제9조제2항 및 안 제3항)
- ② 실시간으로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나라장터와 연계할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 및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체화 (안 제9조제4항 신설)
- ③ 불공정 조달행위 또는 비촉물자 재판매 여부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달청장의 자료요청 대상 명확화 (안 제10조)
- ④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및 관리를 위한 기준, 절차, 연도별 제출서류, 지정기간,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대한 기준 마련 (안 제33조의2 신설)

- ⑤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인가기준 및 절차, 등기사항,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감독기준 등을 정함 (안 제42조의2부터 안 제42조의16 신설)

※ 문의처 : [기획재정부 공공조달정책과](tel:044-215-5236) (전화: 044-215-5236, 팩스: 044-215-8113)

기획재정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4.11.
~05.21.

혁신제품의 발굴·추천,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대상 교육·홍보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데 필요한 지정 신청서 서식과 제출서류, 지정시 발급하는 지정서의 서식을 정함 (안 제11조의2 신설)
- ②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후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대상과 변경 신청서 서식 및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11조의3 신설)

※ 문의처 : [기획재정부 공공조달정책과](tel:044-215-5236) (전화: 044-215-5236, 팩스: 044-215-8113)

행정안전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12.
~05.22.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우수기업 인증만료 시기 본격 도래에 따른 인증연장 처리 절차 개선 및 인증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중간 점검제도 도입, 인증대행기관을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우수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안 제7조제3항)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인증규제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함

② 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 처리절차 보완 (안 제7조제4항, 제5항, 제6항)

- 기존에는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60일 전에 통보하고 인증 만료 전 연장신청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증연장 준비기간과 연장업무 처리기간이 촉박하여 인증 심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우수기업의 인증연장 준비기간과 연장업무 처리기간 확보를 위해 인증만료사실을 기존 60일 전에서 120일 전에 통보하도록 개정하고, 인증만료일 60일 전까지 인증연장을 신청하도록 개정함

③ 인증 중간점검 제도 도입 (안 제7조의2)

- 현행 법 제8조에 인증평가 기준 미달 기업에 대한 인증 취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인증 후 사후관리 절차규정이 부재하여 인증 평가기준 유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우수기업 인증 후 2년이 되는 해에 중간점검을 통해 인증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조건 미달 시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

④ 인증대행기관 지정 유효기간 도입 (안 제9조제3항, 제4항)

- 현행 법 제8조의2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지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보유 등 지정요건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 절차가 미비한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연장신청 시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사후관리 근거규정을 마련함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tel:044-205-4518) (전화: 044-205-4518, 팩스: 044-205-8932)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09.
~04.15.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과 통합발전소사업 등 2개 유형의 전기신사업에 대해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를 사용할 시 전력시장 외 거래 허용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통합발전소사업 에너지자원의 세부 범위를 규정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통합발전소사업 에너지자원 세부 범위 규정 (안 제1조의4)
- ②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연계방식, 재생에너지의 허용범위 등 개정법을 위임사항 구체화 (안 제7조의3, 제19조)
- ③ 전기공급 거부 및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에 법 개정으로 전기신사업에 포함된 통합발전소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추가 (안 제5조의5, 제62조의3, [별표 1])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tel:044-203-3916) (전화: 044-203-3916, 팩스: 044-203-4758)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09.
~05.20.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변경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보증기간 내 자동차 제작 당시의 결함을 자체 시정한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114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에 관한 변경인증을 받고 변경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위반행위 종류 및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에 따른 가중 부과계수를 정하고, 자동차 제작자가 중요사항 외의 변경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변경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보고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차부터 3차까지 각각 500만원으로 정하며, 제작 당시에 발생한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차부터 3차까지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저공해자동차 정의 규정 정비 (안 제1조의2제1항 및 제52조의3)**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 종류별로 정의 규정 신설
 - 전기자동차 등의 정의 규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 ② **저공해건설기계 범위 확대 (안 제1조의2제2항제1호 단서 신설)**
 - 전기건설기계에 기존의 충전식 외 외부전원을 직접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굴착기도 포함
- ③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미준수 자동차제작자 과징금 부과·징수시기를 판매실적 등에 대한 검토 기간을 고려하여 정비 (안 제60조의3제2항 및 제3항)**
 - 실적 확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시기를 ‘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서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년 이내’로 수정
 - 과징금을 부과 통지를 받은 해 9월3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과징금 부과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업무에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의 변경보고 추가 (안 제63조제2항 및 제3항)**
 -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인증 후 중요사항 이외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 보고하도록 함
- ⑤ **한국환경공단 위임업무에 비산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추가 (안 제66조제1항제3호의2)**
 - 한국환경공단 위임 업무에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추가
- ⑥ **자동차제작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변경인증·변경보고 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미보상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별표 12 및 별표 15)**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및 자동차 배출가스의 중요사항 인증 및 중요사항의 변경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 과징금 산정(매출액×5/100×가중부과계수)을 위한 부과 계수를 정함

- 자동차제작자가 변경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변경 보고를 한 경우 1차부터 3차까지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상하지 않는 경우 1차부터 3차까지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⑦ **운행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기술인력 등록 기준 완화 (별표13 제1호나목, 제2호나목)**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기준 기술인력을 (현행) 산업기사 이상 2인 → (개선) 산업기사 이상 1인으로 완화
- 그 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따라 조문 정비

※ 문의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http://www.mae.go.kr) (전화: 044-201-6879, 팩스: 044-201-6873)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4.09.
~05.20.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 당시의 결함을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자체 시정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20114호, 2024. 1.23. 공포, 7.24. 시행)이 개정됨

이에 따라, **중요사항 외의 인증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보고 서식 및 절차를 정하고,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의 보상금 지급 청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가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비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범위에 해당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추가 (안 제51조의2제4항제2호)**

- 설치·운영신고를 한 비산배출시설의 ‘규모를 10%이상 변경’하는 경우에서 ‘규모를 10%이상 변경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 수정

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관련 지자체 약칭 정비 (안 제58조제1항, 제3항, 제5항부터 제8항)**

- (현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 (개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이하 조항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통일

- ③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 관련 지자체 약칭 정비 (안 제59조의2제1항, 별지 제27호부터 제29호)
 - (현행)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개정)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④ 제작차 배출가스 변경보고 방법 마련 (안 제66조의2, 제67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18의2, 별지 제34호 및 안 제34호의6호 신설)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인증 이외 변경인증, 변경보고로 확대
 - 인증변경 신청서 제출 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일원화
 - 중요사항 외 변경할 경우 제출 서식 및 제출 서류 규정
 - 제출받은 변경보고 자료의 수정·보완 요청 방법 규정
- ⑤ 제작사 결함시정 전 자동차 소유자의 자체 시정 보상 기준 마련 (안 제77조의3 및 제77조의4)
 -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마련
 - 보상금의 청구절차, 지급 기한, 지급 거부사유 통지 등
- ⑥ 자동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 등 절차 수행 지자체 정비 (안 제103조제1항부터 제4항 및 제105조, 별지 제47호의2 및 별지 제48호)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 → (개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문의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전화: 044-201-6879, 팩스: 044-201-6873)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09.
 ~05.20.

환경부장관이 생산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에 대해 구체적 법률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2024. 7. 10. 시행)됨

이에 따라 사용료의 관리·운영 기준을 설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 징수 관련 규정 신설에 따른 내용 구체화 (안 제31조)
 - 법 제19조의2에서 정한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결정, 면제, 징수할 수 있는 권한 및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게 위탁하는 근거 마련
- ② 법 제19조의2제3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조문 신설 (안 제27조의2제2항)
- ③ 환경부장관과 한국환경공단이 협의하에 탄력적으로 사용료를 결정 및 감면할 수 있도록 사용료의 결정 및 감면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한국환경공단 운영예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 신설 (안 제27조의2제3항)

※ 문의처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전화: 044-201-6787, 팩스: 044-201-6786)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4.04.09.
~05.20.

환경부장관이 생산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에 대한 규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사용료 결정·감면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법 제19조의2 및 시행령(안) 제31조제4항제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에게 위탁한 사용료의 징수, 결정 및 감면 권한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안 제27조의2제1항)
 - 법 제19조의2제5항의 취지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단위, 사용 용도,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인지 여부 등 사용료 결정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개괄적으로 정함
- ② 법 제19조의2제3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27조의2제2항)
- ③ 환경부장관과 한국환경공단이 협의하에 탄력적으로 사용료를 결정 및 감면할 수 있도록 사용료의 결정 및 감면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한국환경공단 운영예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 신설(안 제27조의2제3항)

※ 문의처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mailto:환경부_화학물질정책과) (전화: 044-201-6787, 팩스: 044-201-6786)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4.04.08.
~05.2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의 전면 확대 시행에 따라 퇴직공제 성립신고 시 공제회에서 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정 시 주·야간 현장 등은 같은 근무 시간대에 실제 이용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 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에 따른 퇴직공제 성립신고 서식 정비(안 제11조 및 제9호서식)
 -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별지 제9호서식)’ 제출 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 또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예외 신청서”를 첨부하도록 함
- ②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 부착 방법 개선(안 제25조)
 - 건설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를 사업장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부착하도록 명시함

③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정 시 주·야간 등 교대근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 (안 별표)

-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정을 위한 ‘근로자 수’ 산출 시 주·야간 또는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가장 많은 근무 시간대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함

④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 무료화 (안 제2호서식)

-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출하는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의 발급 수수료(2,000원)를 삭제함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tel:044-202-7419) (전화: 044-202-7419, 팩스: 044-202-8050)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4.12.
~05.23.

신설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임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법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지정취소 이력이 있는 인증기관의 재지정 방지 (안 제4조, 제1호서식)

-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취소 이력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재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추가하고자 함

②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 마련 (안 제5조의2)

-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법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③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안 별표 3)

-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인증취소 및 업무정지 사항을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하고, 위반 횟수 별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④ 인용조문 최신화 (안 제1조, 제3조, 제5조)

- 법 개정에 따른 부령 위임사항을 본 규칙의 목적 규정에 추가하고, 법 제19조의 항이 구분됨에 따라 부령 내 인용 조문을 최신화하고자 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tel:044-201-4091) (전화: 044-201-4091, 팩스: 044-201-5574)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 건설에 관한 절차, 건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지역기업 우대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293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

이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 및 우대 방법,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안 제2조)

- 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에 관한 사항, 건설 예정 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형식·소요량 및 확보계획 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②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안 제3조)

- 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철도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려고 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안 제4조)

-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계획평면도·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등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④ 지역기업의 우대 (안 제5조)

-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의 범위를 정하고, 우대를 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시행지역의 관할 및 인근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지역기업 우대 계약의 범위 및 우대 절차 등을 규정

⑤ 승인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 (안 제6조)

- 사업 또는 실시계획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등 승인의 취소 등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등을 규정

⑥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 제7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mailto:국토교통부_철도건설과) (전화: 044-201-3953, 팩스: 044-201-5595)

국토교통부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철도공단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계획 승인 등 건설사업의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293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

이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실시계획 승인신청의 절차, 검사 공무원의 증표에 관한 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신청 등 (안 제2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의 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을 규정

②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신청 (안 제3조)

-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승인 신청의 절차 및 관련 서식을 규정

③ 검사 공무원의 증표 (안 제4조)

- 사업시행자의 사무실 · 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 공무원의 증표 서식을 규정

④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안 제5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을 규정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mailto:044-201-3953) (전화: 044-201-3953, 팩스: 044-201-5595)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
(김진표의원 등 11인)**

2024-04-11 발의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수준인 0.72명을 기록하였고 인구 감소의 위기는 향후 국가 성장의 덧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고 있음. 한편, 2022년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약 26조원,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나타나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으로 사교육비 부담 등 고비용의 교육구조가 지목되고 있음

이를 통해 볼 때, 국가가 책임지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인재로 양성하는 공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처방이며 궁극적으로는 인구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임

그 일환으로 정부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초·중등 교육 현장에 보급하는 등 공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AI 디지털 교과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지능정보기술에 기반한 학습진단과 분석, 개인별 학습 수준과 속도를 반영한 학생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학습 코스웨어로 교과별·학년별 특성에 맞게 도입될 예정임

공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이 선도적으로 제공된다면 사교육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학생별 학습진도·이해도 및 성취도 등의 분석자료가 교원에게 제공되므로 교원이 공교육 혁신의 주체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임

이에 양질의 교육 콘텐츠와 기술적 안정성이 확보된 AI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보급되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만족하는 맞춤형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정책과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은 디지털 기반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맞춤형·자기주도적 교육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며 공교육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디지털기반교육은 안전하게 설계·추진되고 모든 학생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교원의 역할과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 ③ 교육부장관이 디지털기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기반교육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6조 및 제7조)

- ④ 디지털기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⑤ 교육부장관이 디지털교과서의 품질 및 안정성을 점검하고, 오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후관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 ⑥ 교육부장관은 학습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학습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안 제13조)
- ⑦ 학습데이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관리·운영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하고 개발사 등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개발사가 디지털기반교육과 무관한 개발사의 자체적인 사업을 위해 학습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등 학습데이터의 수집·이용·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 ⑧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학습데이터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검색·복제하는 행위,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학습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안 제15조)
- ⑨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기반교육 과정에서 교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생 등이 학습데이터를 본인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 ⑩ 학교의 디지털기반교육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기반의 공교육 혁신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 및 제18조)
- ⑪ 디지털기반교육의 안정적인 추진과 실태점검 등을 위하여 개발사, 디지털교과서 및 학습데이터 관련 업무 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지도 및 감독 권한을 규정함 (안 제21조)
- ⑫ 학습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벌칙 및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3조 및 제24조)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 예정된 회의 일정 없음

지난 4/10(수)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진 이후 현재까지 제21대국회 남은 임기내 의사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임. 다만 추후 제22대 국회 개원 일정은 교섭단체들간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현행 국회법 규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종 입법전략자문팀 Special Report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그 결과와 영향」
참조 요망

[제22대 국회 개원 일정 및 원 구성 절차]

절 차	국회법 조항
1. 국회의원 임기 개시	- 2024. 5. 30.
2. 최초 임시국회 집회공고	-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국회법 § 5①)
3. 최초 임시국회 집회 (의장·부의장 선거)	-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 -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실시(§ 15②)
4.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 위원정수규칙개정특위 구성의 건: 의장제외+본회의 의결 - 위원정수 규칙 개정: 특별위원장 제안+본회의 의결
5. 상임위원회 위원 수 배분	-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 48①)을 기준으로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배분
6. 상임위원장 배분	- 국회법상 규정은 없음 - 관례상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 등을 기준으로 교섭단체 간 합의 배분
7.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임시회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선임 요청 (§ 48①)
8. 상임위원장 선거	-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부터 3일 이내 실시(§ 41③) - 상임위원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거(§ 41②)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4/15(월)	「이달의 입법민원」(2024. 3월호) 발간	국회사무처	
	4/15(월)	「THE 현안」 제7호 발간 - 주요국의 가치 기반 의료제도	국회도서관	
	4/16(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42호(2024-4호) 발간 - 규제중심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		
	4/16(화)	「현안, 외국에선?」 제80호(2024-8호) 발간 - 미국의 반도체 리더십 :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 출범		
	4/17(수)	「금주의 서평」 제674호(2024-15호) 발간 - 도서명 :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 저자 : 제니퍼 D. 스쿠바		
	4/17(수)	「World&Law」 제2024-8호 발간 - 2050년 탄소중립, 어떻게 달성하지?		
	4/17(수) 10:0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간담회 개최 - 통계청의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2023.12.)의 방법론과 추계결과에 대한 이해도 제고	국회예산정책처	의정관 505호
	4/15(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3호 발간 - 사교육 과열과 미래인재 양성: 관련성 분석 및 정책 제언	국회미래연구원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3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4/8(월)	「THE 현안」 제6호 발간 - 저출산 · 고령화 시대의 이민정책	국회도서관	
	4/9(화)	「금주의 서평」 제673호(2024-14호) 발간 - 도서명 : 기후 리바이어던 저자 : 조엘 웨인라이트, 제프 만		
	4/11(목)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2호 발간 - 국회의원 보좌진이 바라본 제21대 국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미래연구원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4.08~04.14)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4/9(화)	통상관세	EU의 『역외보조금 규정』 운영 현황 및 시사점
4/11(목)	입법전략자문	Special Report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그 결과와 영향
4/11(목)	금융	코인 발행재단과 MM업체 간의 소송에서, 제1심에서 사실상 대부분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코인 발행재단 측을 대리하여 양 측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 낸 사례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